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
(왕정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05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왕정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 경, 김기덕, 김성준, 김영철, 박강산, 박수빈, 박칠성, 송도호, 신복자, 이상훈, 이원형, 임종국, 최기찬, 홍국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.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

○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, 알고리즘의 편향성,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, 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

○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○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논의 중이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,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촉진시키고 서울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(안 제1조～제2조

나. 용어의 정의(안 제3조)

다. 시장의 책무(안 제4조

라.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
마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

바.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9조～제10조)

사. 지원사업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
2.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
3.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, 나이, 민족, 종교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
4. 사회·경제·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공지능”이란 학습, 추론, 지각, 판단,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.

2. “인공지능기술”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.

3. “고위험영역 인공지능”이란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

2.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

3.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

4. 인공지능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·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

5.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

6.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

7.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이드라인)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(이하 "가이드라인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2.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가이드라인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5.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,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
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3.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

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.

제1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·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
2.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, 시험 및 평가
3.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4.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
5.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
6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자치구,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적극 협력

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6조(기본계획)	×	◦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
2	제7조(가이드라인)	△	◦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, 절차 등이 수립되지 않아 **기술적 추계가 어려움**
3	제8조~제9조	△	◦ 위원회 구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 개최 횟수, 위촉직 위원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참고자료로 제시함
4	제16조(지원사업)	△	◦ 인공지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**기술적 추계가 어려움**
5	제17조(협력체계 구축)	×	◦ 통상적으로 협력체계는 기존 인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**비용추계에서 제외함**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○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, 위원회 설치,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선언적 ·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다만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산출자료[1]를 참고자료로서 제시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☏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---

1) **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 비용 : 28,500천원** = 참석수당(24,000천원) + 업무추진경비(4,500천원)

- 참석수당 = 24,000천원 = 수당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 = 200천원×12명×2회×5년

※ 참석수당 단가 :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※ 지급인원 : 위원 15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

- 업무추진경비 = 4,500천원 = 경비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 = 30천원×15명×2회×5년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